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7. 1.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이, 차장은 부시장이,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관련 공무원과 재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2조).
- 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이천시청등 13개기관의 5급이상공무원(군부대는 소령급장교를, 경찰서는 경위급이상)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안 제3조).
- 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시장이, 차장은 부시장이,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③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掌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이천시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위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이천시청
2. 이천경찰서
3. 이천교육청
4. 이천세무서
5.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6. 군부대
7. 이천소방서
8. 이천기상관측소
9.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
10.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천전화국
11.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12. 이천의료원

13. 대한적십자사 이천시지회

14. 기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재해대책본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